

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발급번호 제 호

수령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	구분	[] 소유자 [] 관리자 [] 점유자		
조치명령 대상	대상			
	위치			
위반사항	위반법령			
	위반내용			
조치명령	조치방법	[] 개수 [] 이전 [] 제거		
		[] 사용금지 [] 사용제한 [] 사용폐쇄		
		[] 공사정지 [] 공사중지 [] 기타()		
	조치기간			
	조치사항			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소방청장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
직인

처벌기준	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유의사항	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,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